

[최종 정오표]

P22 조기재취업 수당	(오) <u>대기기간 지난 후</u>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/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		
	(정) <u>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</u>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/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		
P26 노무제공자 피보험 단위기간	(오) 1-[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(월단위)/ <u>9</u> 개월]<= 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(월단위)/180일 + 예술인으로서의 단위기간(월단위)/ <u>12</u> 개월		
	(정) 1-[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(월단위)/ <u>12</u> 개월]<= 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(월단위)/180일 + 예술인으로서의 <u>피보험</u> 단위기간(월단위)/ <u>9</u> 개월		
P29 6+6 육아휴직	(오)		
	시작일~ <u>3</u> 개월	월 통상임금	200
			250
			300
			350
			400
			450
	<u>4</u> 개월~종료일	통상임금 100분의80	상한150하한70
	(정)		
	시작일~ <u>6</u> 개월	월 통상임금	200
			250
			300
			350
			400
			450
	<u>7</u> 개월~종료일	통상임금 100분의80	상한150하한70
P41 고용유지 지원금	(오) ② 고용유지조치 실시 <u>1개월 전까지</u>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할 것		
	(정) ② 고용유지조치 <u>실시에정일 전날</u> 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<u>1개월 단위의</u>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할 것		
P41 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금 지원요건	(오) ②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3개월 이상 실시한 후 일정한 피보험자 수에 대해 <u>90</u> 일 이상 휴직을 실시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		
	(정) ②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3개월 이상 실시한 후 일정한 피보험자 수에 대해 <u>30</u> 일 이상 휴직을 실시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		
P54 노무제공자 정의	(오)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 +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		
	(정) <u>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(전속성 요건) 삭제</u>		
P65	(오) ③ 평균임금 <u>70</u> < 최저임금 : 최저임금		

저소득 휴업급여	(정) ③ 평균임금 <u>90</u> <최저임금: 최저임금
P66 장해급여	(오) 악화: 재판정 <u>진찰일부</u> 변경된 등급으로 지급 호전: 재판정 <u>결정일부</u> 변경된 등급으로 지급
	(정) 악화: 재판정 <u>진찰일 다음달</u> 부터 변경된 등급으로 지급 호전: 재판정 <u>결정일 다음달</u> 부터 변경된 등급으로 지급
P68 연금 수급권자	(오) ⑦ 수급권자 아님 + <u>장해등급 2급(시각장애 3급)이상</u>
	(정) ⑦ 수급권자 아님 + <u>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</u>
P72 직업 훈련수당	1일 장해보상연금 + 1일 직업훈련수당 > 평임 <u>100/70</u> -> 초과하는 금액 중 직업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않음
	1일 장해보상연금 + 1일 직업훈련수당 > 평임 <u>70/100</u> -> 초과하는 금액 중 <u>직업훈련수당에 해당하는 만큼</u> 은 지급하지 않음
P74 장해 특별급여 수급자	(오) 취업가능기간: 정년 만 <u>65</u> 세
	(정) 취업가능기간: 정년 만 <u>60</u> 세
P87 과태료	(내용 추가) <u>300만원 이하 과태료: 플랫폼운영자가 플랫폼 이용 및 보험관계 확인에 관한 공단의 정보제 공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</u>
P94 고용보험 요율	(내용추가) ⑥ <u>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증가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보험연도의 다음보험연도부터 3년동안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기 전의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. 다만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증가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.</u>
P97 고용보험료 계산	(오) <u>6) 일수에 비례한 월별보험료의 산정</u>
	(정) <u>6) 월 중간에 고용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월별보험료의 산정</u> <u>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. 다만, 매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산정한다.</u>
P156 재심사청구	(오)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<u>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</u>
	(정)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

*p103의 가산금 징수 예외는 가산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가 맞습니다.

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

제24조(가산금의 징수)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. 다만,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동법 시행령

32 조(가산금 징수의 예외) 법 제 24 조제 1 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
1. 가산금의 금액이 3 천원 미만인 경우

P59. 출퇴근 재해의 예외

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	원 칙	출퇴근 재해로 인정 일탈과 중단이 있으면 불인정
	예 외	일탈과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 [19] -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[20] -선거 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-직업능력개발, 훈련을 받는 경우 -근로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, 장애인을 보육 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-의료기관,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행위 -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<u>의료기관 중에서 요양 중인</u> 가족을 돌보는 행위
적용 제외		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으 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-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-개인택시운송사업 -퀵서비스업자 *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+본인 주거지 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 유하는 경우(적용x)